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우100-130 중구 순화동 1-170 삼도빌딩10층/전화(02)779-8027/전송(02)756-9352 (담당)구본준

문서번호 심기 제 116 호

시행일자 1997. 10. 21.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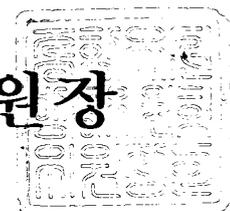
제 목 : 국회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우리 위원회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논의에 따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의 선거방송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회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중 선거방송 관련 의견 1부. 끝.

심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관	1997. 10. 23	입법심의위원
장	16	입법조사관
수	정치개혁입법특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수 신 처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각 당 특위 간사

국회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중
선거방송 관련 의견**

1. 개정(안) 요지

가. 현행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8조 2 관련)

- 구성시기 : 선거일전 180일 까지 (이번 대선에 한하여 선거기간 개시일전일 (11월25일)까지)
- 구 성 : 방송법인·방송학계·대한변호사회·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와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 임 무 : 불공정한 선거방송 심의·의결 → 시정 및 제재조치

나. 민간기구로 공영방송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82조 2 관련)

- 구성시기 : 선거일전 60일 까지 (이번 대선에 한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 까지)
- 구 성 : 방송법인·방송학계·대한변호사회·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

- 임 무 : 대통령선거의 공영방송텔레비전 대담·토론회 주관

※ 법 제82조의 2 공영방송 텔레비전대담·토론회 외의 법 제82조에 의한 언론기관 초청·대담토론회는 관여하지 아니함.

다.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자의 선거운동방송 확대 (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82조 관련)

- 현행 방송국·종합유선방송국, TV·라디오방송국, 방송시설등에 의하여 방송연설,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방송연설·경력방송 또는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종합유선방송의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자도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문 제 점

가. 방송심의 관련 양 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우려 (제8조의 2관련)

- 방송관련법이 아닌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현행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상 방송심의관련 양 위원회(<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우려
- 선거법 개정(안)은 <방송위원회> 산하에 설치키로 되어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방송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사이의 권한설정이 모호함.
- 정당추천자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나. 종합유선방송 선거관련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주체 불분명

- 선거법 개정(안) 제8조의 2는, 현행 「방송법」 상의 <방송위원회>만을 언급하고 있어 종합유선방송 내용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 공중과TV 선거방송심의를 주업무로 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방송매체의 선거방송내용을 심의하게 되는 경우,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움은 물론 종합유선방송 내용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심의를 하게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선거방송 심의시 ‘정치적중립’과 ‘공정성’에 관한 핵심 기준은 양 매체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지만, 매체 특성이나 매체별 선거관련 방송형식이나 내용이 달라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적용은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그동안 매체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온 심의기준의 일관성 훼손 및 업계의 반발이 우려됨.
 - 두 매체의 선거방송은 양적으로 볼 때, 이미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여지며, 98년 지자체 선거시부터 오히려 종합유선방송이 지역매체적 특성을 활용한 선거방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특히, YTN 및 MBN의 일일 국내뉴스 시간은 타 매체보다 월등히 많음)
 - 또한, 종합유선방송은 풍부한 방송시간을 활용하

여 ‘후보자 연설회’등을 다수 중계한 바 있으며, 뉴스전문채널은 정치뉴스관련 내용만으로 구성되는 ‘정치광장’ 등의 독특한 프로그램도 있음.

【참고자료】 96년도 국회의원 선거관련 방송실시 횟수

구 분	케이블TV			공중파 TV			
	PP	SO	계	KBS	MBC	민 방	계
선거 특집방송	2	-	2	29	17	6	52
대담 / 토론회 (토론회 중계 등)	4	7*	13	5	11	23	39
후보자 연설통송 (방송시설주관 포함)	24	46*	70	4	18	·	22
후보자 경력방송(소개)	6	52*	58	12	·	·	12
개 표 방 송	1	44*	45	1	1	4	7
계	37	149*	188	51	47	33	131

* 케이블TV의 통계에서 재방송 부분은 제외하였으며, 후보자 연설통송에는 ‘합동유세장’을 중계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 PP의 선거방송은 주로 YTN이 실시한 것이며, SO의 통계는 선거방송을 실시한 SO의 수로 표기하였음. 따라서, 개별 SO당 평균 2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연설통송 및 경력방송 횟수는 통계표상의 숫자보다 훨씬 많음.

※ 일반 뉴스보도는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 공중파TV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연구’

※ 위의표를 보면, 두매체간의 선거방송에서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국회의원 선거등에서 공중파TV는 중요지역 내지 전국적 이슈를 다루는 역할로, 케이블TV는 실질적인 선거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매체로서의 특징이 드러남.

다. 개정조문 일부분구 현 종합유선방송 체계와 불일치 (제71조 제11항, 제82조 제1항 관련)

- 제82조 제1항 관련, 기존 선거법에서는 ‘종합유선방송국’과 ‘보도채널’은 언론기관으로 분류(선거법 시행령 제4조 연관해석)해온 바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보도채널’

만을 추가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개정조문에 ‘종합유선방송국’도 명시하는 것 필요. (‘종합유선방송국’의 대담·토론회 개최는 지자체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미 시행해 온 바 있음)

- 제71조(방송연설)제11항 관련, 제11항은 동시재송신 또는 녹화재송신을 할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개정안은 ‘공중파 방송연설’을 ‘보도채널’과 ‘종합유선방송국’, ‘중계유선방송사’가 녹화재방송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종합유선방송국의 공중파 방송내용에 대한 녹화재송신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 종합유선방송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임.

3. 위원회 조정요구 의견

가. 제8조의 2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양 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및 방송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처리할 업무량·처리절차 그리고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각기 구성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양 위원회가 정해진 시기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해당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함.

- 특히,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심의내용·제재조치 등의 내용을 양 위원회가 후보자나 선관위·정당에 통보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양 위원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필요
 - 양 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시기는 선거일 90일 이전 정도가 적당
 - 위원 구성에 있어, ‘정당추천’은 배제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양 위원회의 정해진 심의절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며, 제재조치도 양 위원회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 필요
- ※ 조정요구의견 세부내역 : 별첨참조

나. 개정조문 일부분구 종합유선방송 체계에 맞게 조정
(제71조 제11항, 제82조 제1항 관련)

-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정내용 보완
 - 제1항 관련, 언론기관의 범위에 개정안에서는 ‘보도채널’만을 추가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종합유선방송국’도 추가 명시 필요.
- ※ ‘종합유선방송국’은 대선후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지방선거 등에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음.

○ 제71조(방송연설) 제11항 관련 일부문구 조정이 필요

- 제71조 제11항의 조문내용에서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을 추가하는 것과 ‘제1항의’를 ‘방송법에 의한’으로 수정하는 것은 현행 종합유선방송체계에 부적절하므로, 현행 조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종합유선방송국의 ‘녹화재송신’은 불가능하므로 ‘동시 재송신’에 대한 부분만 인정)

※ 종합유선방송의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자’의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의 선거방송 참여확대는 바람직함.

※ 조정요구의견 세부내역 : 별첨참조

첨 부 : 조정요구의견 조문대비표 1부.

調整要求意見 條文對比表

政治改革立法特委 修正案	調整要求意見
<p>第8條2(選舉放送審議委員會) ①放送法第11條(設置)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 (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는 選舉放送의 公正性を 유지하기 위하여 選舉日전 180日 까지 選舉放送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p> <p>②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放送法人·放送學界·大韓辯護士會·言論人 團體 및 市民團體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交渉團體를 가진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9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p> <p>③ 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하거나 政治에 關係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選舉放送의 政治的 中立性·衡平性·客觀性 및 제작기술상의 均衡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選舉放送의 公正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公表하여야 한다.</p> <p>⑤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選舉放送의 公正여부를 調査하여야 하고 調査결과 選舉放送의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및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 放送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放送委員</p>	<p>第8條2(選舉放送審議委員會)①放送法第11條(設置)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 및 <u>綜合有線放送法 第34條(綜合有線放送委員會의 設置)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委員會(이하 “綜合有線放送委員會”라 한다)는</u> 選舉放送의 公正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u>選舉日전 90日 까지 각기</u> 選舉放送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p> <p>②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放送法人·放送學界·大韓辯護士會·言論人 團體 및 市民團體등이 추천하는 者를 <u>포함하여 9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u></p> <p>③ (국회 특위 개정안과 동일)</p> <p>④ (국회 특위 개정안과 동일)</p> <p>⑤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選舉放送의 公正여부를 <u>審議하여야 하고</u> 選舉放送의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정해진 節次에 따라 필요한 시정 및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政治改革立法特委 修正案	調整要求意見
<p>會는 不公正한 選舉放送을 한 放送法人에 대하여 通보받은 시정 및 제재 조치를 내용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p> <p>⑥ 候補者 및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舉放送의 내용이 不公正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選舉放送審議委員會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審議·議決하여야 한다.</p> <p>⑦ 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u>放送委員會規則</u>으로 정한다.</p> <p>第70條(放送廣告) ① 選舉運動을 위한 放送廣告는 候補者(大統領選舉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 期間중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u>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放送法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과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국·報道에 관한 프로그램 供給業을 말한다)을</u>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廣告時間은 1回 1分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再放送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放送施設을 선정하여 당해 放送網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p> <p>1. 大統領選舉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20회 이내</p>	<p>⑥ (국회 특위 개정안과 동일)</p> <p>⑦ 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u>放送委員會와 綜合有線放送委員會 規則</u>으로 정한다.</p> <p>第70條(放送廣告) (국회 특위 개정안과 동일)</p>

政治改革立法特委 修正案	調整要求意見
<p>2. 市·道知事 選舉 第2項의 地域放送施設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각 3회 이내. 다만, 放送廣告를 시청할 수 없는 地域이 있어 다른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을 동시에 廣告하는 것은 1회로 본다. ②~⑥ (생략)</p> <p>第71條 (候補者등의 放送演說) ①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期間중 <u>放送施設(放送法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과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 말한다)을</u> 이용한 演說을 할 수 있다.</p> <p>1. 大統領選舉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한 演說員이 각각 1회 20分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各11회 이내 2.~5. (생략)</p> <p>②~⑩ (생략) ⑪ <u>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 및 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中繼有線放送社를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가 放送法에 의한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을 中繼放送하는 때에는 放送演說을 행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여야 한다.</u> ⑫ (생략)</p>	<p>第71條 (候補者등의 放送演說) ① </p> <p>1. 大統領選舉 </p> <p>2.~5. (현행과 같음)</p> <p>②~⑩ (현행과 같음) ⑪ <u>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中繼有線放送社를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가 第1項의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을 中繼放送하는 때에는 放送演說을 행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여야 한다.</u> * 개정안 이전 현행조문이 바람직함 ⑫ (현행과 같음)</p>

政治改革立法特委 修正案	調整要求意見
<p>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p> <p>①放送施設(放送法에 의한 放送局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 放送局 또는 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가 그에 부담으로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등의 放送演說외에 選舉運動期間중 候補者(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를,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市·道議員候補者를 말한다)를 選舉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候補者의 演說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選舉區(地域區國會議員 選舉와 地域區市·道議員 選舉에 있어서는 해당 地域區)單位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그 演說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③ (생략)</p>	<p>第72條(放送施設 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p> <p>(國회 특위 개정안과 동일)</p>
<p>第74條(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①韓國 放送公社외의 放送施設(放送法에 의한 放送局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가 그의 부담으로 候補者의 經歷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選舉區 單位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第74條(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p> <p>(國회 특위 개정안과 동일)</p>

政治改革立法特委 改正案	調整要求意見
<p>제82조(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 ① 텔레비전 放送局·라디오 放送局·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者·定期刊行物登錄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一般 日刊新聞社등 言論機關(이하“言論機關”이라 한다.)은 選舉運動期間중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候補者가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 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候補者의 承諾을 받아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등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p> <p>②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① (경과규정) 제8조의 2 및 제82조의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전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제82조(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 ① 텔레비전 放送局·라디오 放送局·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者·</p> <p>.</p> <p>② ~④ (현행과 같음)</p>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여·야 3당 합 의 사 항

고비용정치구조를 청산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개혁입법을 위하여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3당총무는 그동안 20여차례의 회담을 갖고 진지한 토론과 협상을 통하여 다음사항을 합의하였음.

1997. 10. 31.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長

新韓國黨 院內總務

國民會議 院內總務

自民聯 院內總務

金重賢
문은하
이정후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여·야 3당 합 의 사 항

고비용정치구조를 청산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개혁입법을 위하여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3당총무는 그동안 20여차례의 회담을 갖고 진지한 토론과 협상을 통하여 다음사항을 합의하였음.

1997. 10. 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I. 고비용정치구조개혁을 위하여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이용을 금지한다.

- 제89조제1항 개정
- 제89조의2 신설
- <조문문안>

第89條의2(私組織등을 이용한 選舉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舉에 있어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研究所·同友會·鄉友會·山岳會·早起蹴球會, 政黨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私組織 기타 團體를 設立하거나 設置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選舉運動이외의 목적으로 設立되거나 設置된 團體 기타의 組織이나 그 構成員에게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金品·響應 기타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당해 團體나 組織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2. 선거구내의 각종행사에 금품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도록 상시 제한하고, 축의·부의금품도 일정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 제117조의2 신설
- <조문문안>

第117條의2(祝儀·賻儀金品등의 상시제한) ①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政黨의 地區黨 代表者·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配偶者는 選舉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選舉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또는 당해 選舉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選舉區民과 연고가 있는 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를 할 수 없다.

1. 野遊會·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등 각종행사에 金品 기타 利益을 제공하는 行위
2. 冠婚喪祭儀式 기타 慶弔事에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金額을 초과하여 祝儀·賻儀金品을 제공하는 行위

②누구든지 第1項의 行위를 약속·지시·勸誘·斡旋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親族, 政黨의 黨職者등 특정대상과 金額범위안에서의 行위와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개최하는 연설회는 옥내집회로 제한하고, 그 회수도 현행 구·시·군마다 3회 이내에서 시·도마다 2회 이내와 구·시·군마다 1회로 축소한다.

- 제77조제1항 개정

- <조문문안>

第77條 (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 ①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候補者·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은 選舉運動期間중에 候補者 1人마다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을 위한 演說會를 개최할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1回 5時間이내에서 市·道마다 2회이내와 區·市·郡(하나의 區·市·

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마다 1회. 이 경우 公開施設에서의 屋內(천장이 있고 사면이 폐쇄된 場所를 말한다)集會에 한한다.

4.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현행 전단형 2종, 명함형, 책자형 각 1종등 4종의 소형인쇄물을 책자형과 전단형 각 1종으로 축소하고,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이를 폐지한다.

- 제66조제1항 개정

5.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소속당원에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의 종류를 현행 전단형 및 책자형 각 2종이내에서 전단형은 폐지하고 책자형도 1종으로 축소한다.

- 제138조제1항 개정

6. 선거운동방법중 자필서신과 자동송신장치에 의한 전화는 이를 폐지한다.

- 제109조제1항 개정

7. 정강·정책의 신문광고회수를 현행 임기만료시 80회이내, 대통령궐위에 따른 선거나 재선거시 30회이내에서 각각 50회이내 및 20회이내로 축소한다.

- 제137조제1항 개정

8. 대통령선거의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2대·2조에서 1대·1조로 축소한다.

- 제79조제3항 개정

9.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당가나 정강·정책 또는 후보자의 활동상황등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9조제10항 개정

10.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지를 명문화한다.

- 제135조제3항 개정

11.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또는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제105조제2항 신설

12. 대통령선거에 있어 표찰·수기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에서 선거관계자로 축소한다.

- 제68조제1항 삭제

II.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하여

1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신문광고회수를 현행 150회이내에서 70회 이내로 축소하되, 10%이상 득표자에 대하여 현행은 50회만 국고보전하던 것을 70회 모두 국고보전토록 한다.

- 제69조제1항 개정

14.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현수막의 수량을 현행 읍·면·동수의 2분의1에 상당하는 수 이내에서 구·시·군마다 3매이내로 축소하되, 10% 이상 득표자의 현수막 제작·게시비용은 국고보전토록 한다.

- 제67조제1항 개정

15.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작성·배부하던 소형인쇄물을 후보자가 작성하되 선관위가 배부하도록 한다.

- 제68조제6항 개정

16.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10%이상 득표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을 선거후 국고보전토록 한다.

- 제135조제5항 신설

Ⅲ. 선거운동의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17.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의무규정을 강화한다.

- 제10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조문문안>

第108條 (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등)

③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舉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 밝혀야 하되, 당해 調査對象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特定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偏向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質問하는 행위
2. 被調査者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調査者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質問하거나, 被調査者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娛樂 기타 射倖性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調査하는 행위
4. 被調査者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公開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選舉에 관한 輿論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하는 때에는 調査依頼者와 調査機關·團體名, 被調査者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公表 또는 報道하여야 하며, 選舉에 관한 輿論調査를 실시한 機關·團體는 調査設計書·被調査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輿論調査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選舉의 選舉日후 6月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8.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조사권을 명시한다.

- 제272조의2 신설

- <조문문안>

第272條의2(選舉犯罪의 調査등) ①各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委員·職員은 第18條(選舉權이 없는者)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犯에 관하여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認定되거나, 候補者와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및 選舉事務員이 제기한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는 疏明이 理由있다고 認定되는 경우 또는 現行犯의 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場所에 出入하여 關係인에 대하여 質問·調査를 하거나 關聯書類 기타 調査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의 出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質問·調査를 받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職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에 出入하거나 質問·調査·資料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關係인에게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제시하고 所屬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疏明節次·방법, 證票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19.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현행 후보자에 국한하던 것을 후보자 이외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까지 확대한다.

- 제250조제1항 개정

20.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등의 지급은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 제135조제4항 신설

2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 행위금지기간을 선거기간개시 일전 30일부터로 통일하고,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지구당이상의 공개행사에의 의례적인 방문이나 법령·조례에 근거한 직무수행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복구행위, 직업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등 금지기간중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86조제2항 개정

IV.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2 「대담」과 「토론」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한다.

- 제81조제2항 개정

- <조문문안>

第81條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②第1項에서 “對談”이라 함은 1人의 候補者 또는 對談者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하여 司會者 또는 質問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討論”이라 함은 2人이상의 候補者

또는 討論者가 司會者의 主管하에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한 主題에 대하여 司會者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23. 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대통령선거기간중 대담·토론회를 3회이상 개최·보도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선거일전 60일(이번 대통령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

- 제82조의2 신설

- <조문문안>

第82條의2(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討論會) ①公營放送社(韓國放送公社와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法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공동하여 大統領選舉에 있어서 選舉運動期間중 候補者중에서 1人 또는 數人을 招請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텔레비전放送을 이용한 對談·討論會를 3회이상 개최하여 報道하여야 한다.

②公營放送社는 공동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를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選舉日전 60日까지 大統領選舉放送討論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討論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③討論委員會는 放送法人·放送學界·大韓辯護士會·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 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議席을 가진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11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討論委員會의 委員을 추천하는 放送法人·放送學界·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 등의 범위와 추천 절차 등은 公營放送社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討論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⑤討論委員會는 초청 候補者와 司會者·質問者의 선정, 對談·討論의 형

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의 進행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⑥公營放送社는 共同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의 開催日前日까지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對談·討論會의 開催申告를 하여야 한다.

⑦公營放送社가 아닌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放送施設을 말한다]는 第1項의 對談·討論會를 中繼放送할 수 있다.

⑧第81條(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2項·第6項 내지 第8項의 規定은 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에 이를 準用한다.

24. 방송 및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신설한다.

-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 <조문문안>

第8條의3(放送의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選舉日前 90日부터 選舉日까지 放送에 의하여 公表된 人身攻擊, 政策의 歪曲宣傳등으로 被害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送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이내에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②放送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時間이내에 無料로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事實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③第2項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放送社의 代表는 選舉

放送審議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회부 받은 때부터 48時間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放送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第8條의4(定期刊行物の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選舉日전 90日 부터 選舉日까지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人身攻撃·정책의 歪曲宣傳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는 그 報道가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이내에 定期刊行物을 發行하는 者 (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掲載를 請求할 수 있다.

②言論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48時間이내에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크기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의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掲載하여야 하되, 다음 發行號가 選舉期間 종료후에 發行되는 경우에는 당해 言論社의 부담으로 日刊新聞에 이를 掲載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③第2項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言論社의 代表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言論仲裁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言論仲裁委員會는 回附를 받은 때부터 48時間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관한法律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25. 선거일전 12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

- 제8조의2 신설
- <조문문안>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 ①放送法 第11條(設置)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는 選舉放送의 公正性を 유지하기 위하여 選舉日전 120日까지 選舉放送審議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放送學界·大韓辯護士會·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 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交涉團體를 가지는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④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選舉放送의 政治的 中立性·衡平性·客觀性 및 제작 기술상의 均衡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選舉放送의 公正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⑤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選舉放送의 公正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選舉放送의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및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 放送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放送委員會는 不公正한 選舉放送을 한 放送社에 대하여 통보받은 시정 및 제재조치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候補者 및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舉日전 120日부터 選舉放送의 내용이 不公正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選舉放送審議委員會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審議·議決하여야 한다.

⑦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放送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26.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언론기관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대담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 제82조제1항 단서신설

27.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회수를 현행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7회 이내에서 각 11회 이내로 확대한다.

- 제71조제1항 개정

28.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시설을 이용한 후보자의 방송광고회수를 현행 텔레비전 및 라디오별 20회이내에서 30회 이내로 확대하고, 경력방송의 회수도 현행 KBS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상에서 각 8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 개정

29.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체도 선거 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82조 개정

30.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광고를 위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중첩되는 경우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조정토록 한다.

- 제70조제5항 개정

V. 기타 제도개선사항과 관련하여

31.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이미 후임대통령의 선거가 실시되어 당선인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인이 대통령이 궐위된 때부터 임기를 개시하도록 한다.

- 제14조제2항 신설

32.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토록 한다.

- 제150조제4항 후단신설

33.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출마시 사퇴기한을 현행 선거일전 90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3조제1항 개정

34. 선거법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토록 한다.

- 제18조제3항 개정

35. 대통령선거 기탁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제56조제1항 개정

36. 선거운동기간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등에 관한 비방의 경우에는 각급선거위원의 요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한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82조의3 신설

37. 여러 조문에 산재해 있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유형을 제112조에서 통합·정리하고, 음식물의 통상적인 범위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 제112조제2항 및 제141조 내지 제143조 개정

38.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거거하는 자에 대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8조제3항 개정

39. 선전벽보등 자동차부착 선전물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검인 제도를 폐지한다.

- 제79조제6항, 제91조제4항 개정

40. 선거용자동차나 확장장치등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가액 또는 선관위가 공고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계상토록 한다.

- 제129조제3항 개정

41. 선거운동등을 위한 신문광고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한다.

- 제15조제2항 삭제

2. 정치자금을 양성적, 합법적으로 조달하게 하기 위하여 친족간을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한다.

- 제30조제8호 신설

- <조문문안>

8.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者. 다만,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者의 관계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기탁금제 폐지, 음성적 자금에 대한 처벌규정신설에 따른 보완책으로 각 후원회의 기부한도를 2배 상향조정하고, 4급상당 보좌관을 1인 증원하여 조사활동비와 연구용역비의 지출감소를 기하도록 한다.

-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개정

※ 보좌관증원은 소관위원회인 극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

4. 국고보조금중 100분의 20이상을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사

용하도록 의무화한다.

- 제19조제2항 신설

5. 후원회의 금품모집방법으로 집회, 우편 및 광고에 의한 모금방법외에 통신에 의한 모금방법과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방법을 신설한다.

- 제6조의4제1항 개정

6. 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 선택적으로 1회에 한하던 집회 또는 광고에 의한 모금을 각각 1회씩 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통신 및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은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의4제2항 개정

7. 후원회가 모집한 금품을 정당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의4제4항 개정

8. 바자회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가액의 상한을 폐지한다.

- 제6조의5제4항 개정

9. 선거운동기간중에 금품모집을 하는 경우에도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의5제3항 및 제6조의6제3항 개정

10. 후원회를 들 수 없는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한다.

- 제30조제7호 신설

11.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영수증의 반납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한다.

- 제7조제6항 개정

12.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등의 회계보고기간을 종전의 20일이내에서 14일이내로 단축한다.

- 제24조제1항 개정

1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결산보고기간을 종전의 선거일후 30일이내에서 40일이내로 연장한다.

- 제24조제2항 개정